

징계처분결과 통보서

징계처분 대상자	성명	소속	
		직위(직급)	
관할 징계위원회		위원회 개최 일시	년 월 일
징계의결결과	※ 「교육공무원 징계령」 별지 제4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.	다수 비위 경합 여부	[] 해당함 [] 해당 없음
징계처분권자 (징계처분 제청권자)		징계처분 일시	년 월 일
징계처분결과			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5조제2항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처 분 권 자 직인

유 의 사 항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75조제2항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(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, 관할 징계위원회, 징계의결결과, 징계처분권자, 징계처분결과 등)을 공개하는 경우 「형법」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